


조례안 자구정리

- 제332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(24. 2. 28.)에서 원안가결된 「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구 정리하고자 함.

| 개 정 안 | 자 구 정 리 |
|--|---|
| 제3조(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) ① (생략) ② <u>구청장은</u>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화장실에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. 1. 2. (생략) ③ (생략) | 제3조(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</u> ----- ----- 1. 2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|

| | | | |
|-----|------|------|---|
| | | | 행정복지위원장 |
| 담당자 | 전문위원 | 사무국장 |  |
| 박영은 | 김현리 | 조성혁 | |